종 합 감 사 결 과

(기관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2017. 8.

고 용 노 동 부
감 사 관 실

【순　　서】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대상기관 ····· 1

2. 감사범위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1

4. 감사중점 사항 ····· 1

Ⅱ. 감사대상 현황 ····· 2

Ⅲ. 감사결과 ····· 3

1. 총평 ····· 3

2. 지적사항 총괄 ····· 3

3. 분야별 지적사항 ····· 4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기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2. 감사범위: 2014. 7. 12.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2017. 4. 24. ~ 4. 28.(5일간)

○ 인 원: 감사담당관 외 5명

4. 감사중점사항

［공통사항］

○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

○ 자율점검 적정여부 확인 등

［고용센터］

○ 예산집행, 물품관리, 체납처분

○ 각종 지원금 지급 및 지도점검 적정 여부

○ 행정처분 및 부정수급 업무 적정 여부 등

［근로개선지도］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 업무

○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처리, 인·허가 등 승인 업무 등

［산재예방지도］

○ 중대재해 조사,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등

Ⅱ. 감사대상 현황

○ **(행정대상)** 관할지역은 5개 구,군(금정구·동래구·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으로 **사업장 41,238개소, 근로자수 197,632명**('17.2월 기준, 고용보험통계)

* 부산시 전체 사업체(128,653개소)의 32.1%, 근로자(678,051명)의 29.1% 차지

○ **(지역특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의 72.7%(30,270개)를 차지, 300인 이상 사업체는 0.7%(58개)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5.3%(13,516개)로 가장 높고, 음식숙박업 16.5%(8,823개), 제조업 14.7%(7,839개) 순

○ **(고용동향)** 부산시 **고용률**은 **63%**(17.2월 기준)로 **전국 평균(66.6%)**보다 **낮고, 실업률은 5.5%로** 전국 평균(5%)보다 **높음**

- 부산지역 **취업자**는 1,648천명으로 **전년 동월**(16.2월 기준) **대비 5천**명 감소(▲0.2%)

- **실업자**는 96천명으로 **전년 동월**(16.2월 기준) **대비 감소**(▼0.2%)

○ **(노사관계) 관내 노동조합 99개소**(조합원 12,457명) 중 한국노총 37개소(4,661명), 민주노총 4개소(3,415명), 상급단체 미가입 58개소(4,381명)

○ **(산업안전)** '17. 3월 기준 산업재해율이 0.10%으로 전국 산재율(0.12%) 대비 낮은 수준

* 산업재해율: 0.12%('16.3) → 0.10%('17.3)

○ **(직원현황)** '17. 4. 25. 기준, 정원 93명, **현원 91명(충원률 97.8%)**

Ⅲ. 감사결과

1. 총 평

○ **고용센터 업무**

- 각종 지원금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 업무 등 다소 미흡

○ **근로개선지도 업무**

신고사건 처리, 사업장 감독,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처리, 인·허가 승인 업무 등 미흡

○ **산재예방지도 업무**

사업장 감독 등 사후조치와 사업장 정기감독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조사 업무 등이 다소 미흡

2. 지적사항 총괄

실제 조치 건수	총괄 조치 건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천원)				행정상조치(건)			모범 사례 (명)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소계	징계	경고	주의	소계	회수	추징	기타	시정	개선	통보	
14	8	3	3	16	-	2	14	5,621	5,621	-	-	3	-	-	-

* 중복처분으로 실제 신분상 조치인원은 11명

3. 분야별 지적사항

가. 고용센터 분야(지역협력, 고용관리 분야 포함)

1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회수)

○ **(위반내용) 공용차량** 이용 출장자에게 출장비를 관련 규정에 따른 지급단가보다 **과다하게 지급**

○ **(조치사항)** 과다 지급된 출장비 **928,000원**에 대해 **'회수'** 조치

2 복무관리 소홀(시정)

○ **(위반내용)**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면서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 지정을 하지 않거나(13명) 근무지내 출장을 가면서(관용차량 사용은 기재) 사전 허가를 받지 않는(13명) 등 복무관리 소홀

○ **(조치사항)** 전직원 복무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복무관리 철저

3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정년연장) 업무처리 부적정(회수)

○ **(위반내용)**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정년연장) 지원 금액 산정 시 **정년연장 이후 신규채용된 근로자**는 산정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 대상자로 산정하여 **4,393천원 과오 지급**(2개소)

○ **(조치사항)** 부당 지급된 지원금 **4,393천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

4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지원금 업무처리 부적정(회수)

○ **(위반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사업 참여자가 **IAP 수립 후 2개월(월력 기준) 이내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중 300천원을 반환토록 하여야 하나, **반환 미조치**(1건)

○ **(조치사항)** 부적정하게 지급된 지원금 **300천원 '회수'** 조치

5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인정제한 처분 시 처분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지 않는 등** 부적정 처리(9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7급 ○○○ 등 2명 **'주의'** 조치

6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료 연체사업장 미조치(시정)

○ **(위반내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에 따른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해 전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6개소)

○ **(조치사항)** 3회 이상 전용보험료를 연체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시정)'** 조치

7 부정수급 조사결과 피보험자격 미신고 등에 대한 조치 소홀(시정, 주의)

○ **(위반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미신고 등**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관서 및 처리과 등에 **미통보**(6개소, 7명)

○ **(조치사항)** 피보험자격 미신고 등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피보험 이력이 잘못된 근로자에 대한 **이력 정정** 등 **'시정'** 조치

- 3건 이상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8급 ○○○ 등 2명 **'주의'** 조치

나. 감독 분야

1 신고사건 처리 부적정(경고, 주의)

○ **(위반내용)**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그 외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과정에서 46일~177일간 방치(8건)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 소홀

○ **(조치사항)**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7급 ○○○ '경고'** 및 ○○○ 등 3명 **'주의'** 조치

2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처리 등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3건)

- 피의자가 자수 또는 공소시효 만료 시에는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지연조치(42건)

○ **(조치사항)** 지명수배(통보)자 해제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행정6급 ○○○ 등 2명 **‘주의’** 조치

3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시정여부 확인 및 확인점검 결과 보고 소홀**(7건), **최근 3년간 동일한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누락(2건)

○ **(조치사항)** 사업장 감독업무 등을 소홀히 한 행정6급 ○○○ **‘주의’** 조치

4 인·허가 등 승인업무 처리소홀(주의)

○ **(위반내용) 인·허가·승인** 관련 민원서류를 **32~141일까지 지연 처리**(21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지연 처리한 행정6급 ○○○ 등 2명 **‘주의’** 조치

다. 산재예방 분야

1 시정결과 지연보고 사업장 조치 소홀(주의)

○ **(위반내용)**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15~78일을 지연하여 시정결과를 보고**하였음에도 **범죄인지 등 조치없이 종결**(9건)

○ **(조치사항)** 관련 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보건6급 ○○○ **'주의'** 조치

2 중대재해 조사 업무 소홀(경고, 주의)

○ **(위반내용)** 중대재해는 조사착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사의견 등을 재해조사복명서로 보고하여야 하나 **39~85일 지연**(4건)하여 보고

- 추락하여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를 **재해원인 규명 없이** 사업주의 법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재해 등으로 판단 **조사 종결**(1건)

○ **(조치사항)** 재해조사복명을 **3건 이상** 소홀히 한 보건6급 ○○○ **'주의'**, 중대재해를 부적정하게 조사 후 종결한 ○○○ **'경고'** 조치

3 사업장 정기감독 계획 수립 부적정(다-2와 병합 경고)

○ **(위반내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본부에서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여 통보한 ◇◇◇◇*를 **2016년 정기감독계획 수립 시 누락**

* 사고성 휴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업장

○ **(조치사항)**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6급 ○○○은 '중대재해 조사 업무 소홀'과 병합하여 **'경고'** 조치